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3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김태선·이용우·윤후덕
허성무·이병진·김주영
윤종균·박 정·허 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신기 산모와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신 중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모·태아의 건강을 위해 배우자의 지속적인 돌봄과 생활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다양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위험을 예방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u>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9조(육아휴직) ① <u>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u> -----. 1. <u>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2. <u>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3. <u>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u>

② ~ ⑥ (생 략)	<u>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	--